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자치위원회
전문위원 고 일 준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11월 12일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1월 14일

3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의 개정('07.5.)에 따라 우리도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역량강화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함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하며,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,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함(안 제2조)

- 다. 당연직 위원은 도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, 시·군 교육훈련업무 담당 과·팀장,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함(안 제2조)
- 라.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토록 함(안 제3조)
- 마.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과 동법 시행령 개정¹⁾에 따라 ‘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’ 설치조항이 신설되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,

전국적으로 현재 5개 광역시²⁾는 조례가 제정되었고, 기타 광역자치단체도 입법예고, 의회심사 등 조례제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.

지방자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은 지방자치 발전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,

1)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19조(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) 신설 : 2007. 1. 3
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5조(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신설 : 2007. 4. 12

2) 2007년 12월 현재 부산, 인천, 대구, 광주, 울산광역시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.

상위법령에 의거 전국 공통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붙임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.